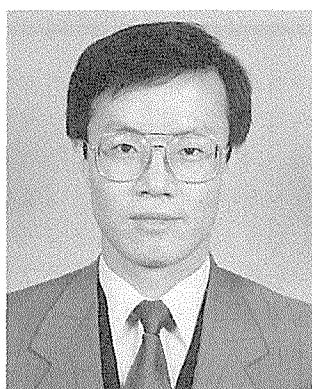


석유 수입업 관리제도의 정책입안 필요성



황 윤 상
<유공 업무부 업무2과장>

I. 머리말

최근 정부는 국내 정유 5사에 대하여 45만8천 BPSD 규모의 상압정제시설의 증설을 허용함으로써 각 정유사들의 증설이 계획대로 완공되는 1996~'97년에는 국내 상압정제시설이 2백50만1천 BPSD 규모로 확대 된다.

이러한 상압정제시설의 증설허가로써 급증하는 국내석유수요에 대한 안정생산공급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에 소요되는 석유류는 국내에서 생산공급토록 한다는 소비지 정제공급 방침을 재차 밝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 정유업계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적극 부응하여 상압정제시설의 적기 증설·확충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중질유 분해·탈황 등 고도화시설에의 투자사업 및 수송 저유 등 물류시설에의 확충투자사업 추진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확고한 방침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석유사업법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미약하여 정유업계의 관련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의 욕에 약간의 검은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이에 금번 지면을 빌어 소비지 정제주의의 견지필요성 및 소비지 정제원칙의 기조확립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입안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와 에너지 부존상황 등으로 미루어 에너지정책입안의 환경이 유사한 日本에서 어떻게 소비지 정제기조가 정착 유지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국내 석유정책의 목표 (석유사업법 제 1조)

석유의 수급안정

- 상압정제시설 및 고도화시설 투자 등 석유생산공급 시설의 확충투자 촉진·소비지정제 기조 견지
- 원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확대정책 추진
- 석유 저장·수송시설 등 물류시설의 확충 추진
- 에너지 소비절약정책의 지속적 추진

석유의 저렴한 공급

-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관리정책 유지
- 석유사업 기금제도 운용을 통한 석유류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정책 운용
- 석유공급업자의 적정이윤 최소화 유지정책 견지

III. 석유안정공급을 위한 소비지정제 기조 견지의 필요성

소비지 정체주의란

한 나라의 석유제품 수요구조는 그 나라의 생활양식, 산업구조 등에 따라서 상이한 반면, 석유제품은 생산구조상 연산품 특성으로 인하여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이 동시에 생산되어 특정유종만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석유제품의 공급구조는 설비구성 및 처리원유유종에 의해서도 달리 나타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석유제품의 수요구조에 세계의 혹은 다른 나라의 석유제품 공급구조가 적합하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한 나라의 석유수요구조에 적합한 석유제품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유를 수입하여 그 나라의 수요구조에 적합한 공급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석유의 안정 적정 공급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석유공급정책기조를 소비지 정체주의라고 하며, 우리나라 및 日本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는 구미제국도 이러한 소비지 정제방식을 국내석유공급의 기본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1. 국제원유시장의 제품시장대비 시황안정성

- 원유는 석유제품에 비하여 국제교역성이 활동하게 큽니다.
- 원유는 생산지가 특정지역 또는 특정국가들에 편중되어 있고 소비지는 전세계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국제교역량이 매우 큰 반면,
- 석유제품은 中東 및 싱가포르 일부 수출용 정제공장을 제외하고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국제교역성이 적음.
- 따라서 원유는 석유제품에 비하여 안정된 시황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황안정에로의 복원력이 강함.
- 유사시 석유제품 수출국의 수출 *Embargo*에 따른 제품 *Availability* 축소
- 세계의 각 소비국 및 소비지역은 자국 또는 자체지역내에 제품 생산제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평상시는 역내 또는 국내 수급불균형에 따른 수출입에 대한 통제는 않음.
- 그러나,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등 세계적인 석유공급 불안상태에 돌입시는 자체 생산제품에 대하여 수출 *Embargo*를 실시할 개연성이 큽니다.
- 산유국의 원유수출 *Embargo*에 대해서는 소비국간의 협조 및 단결(IEA등)을 통하여 공급안정을 꾀할 수 있으나, 석유제품 생산국들의 석유제품 수출 *Embargo*에는 대응이 불가능함.

2. 석유제품대비 원유의 비축용이성

- 1, 2차 석유위기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 주요 소비국들은 석유비축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원유와 석유제품의 시황안정성 비교

(단위 : \$/B, FOB)

		걸프 전쟁 발발전	걸프전쟁기간중		걸프 전쟁	
			최고치	변동률 (%)	증전후	변동률 (%)
원 유	두바이	16.78	36.08	215	14.98	89
	아라비안라이트	17.00	35.90	211	15.77	93
석유제품	등 유	23.01	67.60	294	27.70	120
	경 유	21.87	45.55	208	29.60	135

- 석유를 비축함에 있어서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소비국들은 원유로 비축함이 용이함.
- 석유제품의 다양화로 소규모 다수 비축탱크건설 등 투자비 증가 및 관리의 어려움 존재
- 석유제품 품질유지상 제품비축의 곤란
-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소비국은 원유를 항시라도 제품화할 수 있음.

3. 석유제품의 고급화 및 청정화

- 국가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및 전 세계적인 환경보전 정책의 강화로 인하여 석유류 수요의 경질·저유황화 및 가스보급확대 등의 석유제품의 고급화 및 청정화 추세가 지속화되고 있음.

석유제품 수입의존도 (1992)

	프랑스	일본	대만	한국
국내수요 (천B/D)	1,687	4,063	564	1,407
수입량 (천B/D)	649	567	148	382
수입비율 (%)	38.5	14.0	26.2	27.1

* 상기 제품수입은 국내수급불균형 또는 대규모 소비처 (석유화학, 발전)의 적수입이 대부분임.

* 프랑스는 EC라는 지역경제통합의 특수성 및 산유지역인 북부아프리카의 근접으로 수입비율이 다소 높음.

◦ 日本의 소비지 정제기조

- 日本은 「특정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수입점 정조치법」(1986. 제정)에 의거 동 제품 수입업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관리하여 실질적으로는 석유정제업자 외에는 동 제품 수입이 불가능하게 하여 소비지 정제기조를 정책화하고 있음.

◦ 프랑스의 소비지 정제기조

- 프랑스는 국내에너지 수요에 대한 원자력 공급의존도가 높고 석유에 대한 공급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같은 EC연내에 국제제품시장인 로테르담시장이 존재하며 산유지인 북부아프리카에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석유수입업자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지 정제주의의 기조를 견지하고 있음.
- 석유수입업에 대한 허가제 운용 (A10 업자)

5. 맷는말

- 이와 같은 이유로 중장기적인 석유안정공급정책 목

- 이와 같은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급의 잉여제품이 주종을 이루는 국제 석유제품시장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임.
- 따라서 향후 석유류 수요의 고급화 및 청정화 추세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도화시설 확충 등 석유정책업자에 의한 소비지 정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각국의 소비지 정제기조 유지정책

- 자국 또는 자체지역내 원유생산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에너지안보를 우선시하는 주요소비국들은 소비지 정제기조를 석유정책의 근간으로 유지하고 있음.

표시현을 위해서 현재, 우리정부도 석유사업법상으로는 휘발유, 등유, 나프타 등 일부 석유제품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유회사 또는 실수요자에만 수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지 정제주의의 기조를 정책적으로 유지하고는 있으나, 석유산업 자유화 중장기 석유산업 발전방향 및 석유정책의 중장기적 목표획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일정기간 외국인 투자가 혹은 대규모 종합상사들의 휘발유 등 특정석유제품의 수입사업 추진을 균원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소비지 정제기조를 제도화함이 바람직함.

IV. 소비지 정제주의 기조 포기시 (석유수입업 자유화시) 문제점

국내 석유수급안정 저해측면

1. 정유사 생산공급활동의 위축 초래
- 석유제품의 연산품 특성

- 원유투입시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경질유분부터 B-C유 등 중질유분까지 일정비율로 생산됨.
- 따라서 복합원가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제품별 가격결정이 경직적일 수 밖에 없음.
- 국내외 석유제품의 가격구조 특성
- 현재 국내 석유류 제품가격은 정부통제가격(부분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으나, 정유사의 이윤규제로 사실상 전유종 가격이 통제받고 있음)으로 산업 및 민생정책 차원에서 장기간에 형성된 가격구조는 휘발유 등 소수 유종을 전체 평균보다(즉 국제시장가격)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소수유종판매로 전체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또한 유가가 완전자유화되어 국내 가격구조가 궁극적으로 국제 제품가격구조 및 체계로 접근하더라도 국내 고정비용(신규 고도화시설의 감가상각비, 토지비용, 인건비 등) 수준의 국제수준과의 괴리로 국제 제품시장가격과 동일한 구조 수준으로 갈 수는 없음.
- * 국제 석유제품가격은 스파트가격으로 변동비 회수수준에서 결정됨.
- Hit & Run 식 석유수입업자의 다수출현 가능
 - 상기 석유제품의 연산품 특성 및 국내외 시장구조 차이로 항상 국제 석유제품시장가격과 국내 생산제품가격은 유종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음.
 - 즉 국제 석유제품시장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수급구조를 반영한 변동비 회수기준으로 설정되나, 국내 제품시장가격은 기본적으로 국내 제품수급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국내 생산공급제품은 고정비 등의 일정부분 부담 및 연산품특성상 어떤 제품의 대수요처와의 가격결정교섭력 상황 등에 따라 그 제품의 가격이 타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격결정이 경직적일수밖에 없으므로 특정제품의 수입가격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수익성 있는 제품에의 선별적 수출입활동으로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Hit & Run 식 수입업자의 다수출현 가능
 - Hit & Run 식 수입에 대한 예측불가로 정유사 생산 공급계획 수립불가 및 조업활동 수시변동 불가피

- 정유사는 국내 유종별 수요 및 수요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생산 판매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음.
 - 원유 장기공급계약 (소요원유의 60% 이상) 체결
 - 정제시설별 정기 보수계획 확정
- 국제시장가격의 사전적 Catch가 불가능하여 수입업자의 수입활동을 예측할수 없으므로 적정 생산 판매계획수립이 불가능
- 정유사도 이에 대응하여 생산공급을 최소한 억제하고 수입제품의 수입 판매전략 수립이 불가피
- 이에 따라 원유처리량 감소로 비수익성 제품의 공급 축소에 따른 수급불안요인 상존

2. 고도화시설 투자수익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의욕저하로 중장기 석유수급안정 저해

- 고도화시설 투자의 필요성
- 석유수요구조의 경질화 및 저유황화 추세에 대처 및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해 고도화시설에 대한 적극 투자 필요
- 석유수입자유화로 고도화시설 투자의 불확실성 초래
- 고도화시설은 고온고압의 정제시설로서 대규모 투자자금 소요 시설임.
- 그러나 석유제품가격 및 수입업자 활동의 예측불가로 인한 투자수익의 불확실성 고조로 투자활동 저해 초래

* 현재도 각 정유사의 고도화시설 투자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석유수입자유화시 더욱 지연 또는 투자포기 상황 초래 예상

- 고도화시설투자 추진 않을시 문제점
- 석유수입은 수익이 예상될 때만 이뤄지게 되며, 수입활동 위축시 국내생산설비가 없는 경우 석유제품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국내경질제품 수급불안 초래 및 환경정책 추진 불가능

3. 석유수입업자의 안정공급 확보능력 부재

- 정유사는 원유 장기공급계약 체결 및 제반 정제시설 보유 등으로 국내 소요 석유제품에 대해 안정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음.

정제생산업자와 수입업자의 공급경쟁력 비교

(단위 : \$/B)

	회발유		경유	
	생산	수입	생산	수입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의 판매가능가격	1) 98.69	2) 59.33	1) 33.19	2) 29.61
생산업자의 불리규모	△39.36	-	△ 3.58	-

- 1) 특소세포함 제조장 반출가격 ('93. 7월)
 2) 성가포르 FOB + 운임 + 부대비 + 기금 + 관세 + 특소세

* 정제생산업자는 정부의 가격통제 및 허용이윤 규제 하에서 타제품의 저가유지에 따라
 회발유, 경유 등의 고가책정이 불가피하여 가격변화에 따른 탄력성을 가질 수 없음.

- 국내 석유수급 불안시 공급책무는 정유사에게 귀속 될 가능성이 큼.
- o 반면에 석유수입업자는 석유안정공급역할을 도외시 하고, 단지 일회성 수익추구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할 것임.
- o 수입업자의 수시의 다수 참여 및 퇴출로 정유시설의 가동저하 및 일부시설 가동휴지시 국제시장급변으로 수입업자의 수입중단의 경우에 휴지정제시설의 재가동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중 국내 수요 대처 불가능

품질관리측면 (국민편익 저해측면)

- o 수입석유제품의 품질조악 가능성 큼.
- 국제시장의 석유제품은 *marginal* 제품으로서 국내 규정 제품규격 이하의 저품질일 개연성이 큼.
 - * 韓電 직수입 B-C 품질문제 발생 (1992. 7월)
 - : 한전의 수입원인 VITOL 사가 공급한 울산화력 용 B-C유의 품질문제로 보일러 시설의 연소효율 저하 및 환경규제치를 상회한 바가 있음.
- 불특정 다수 수입업자의 존재는 부정유류 유통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큼
 - 민원 다수발생 예상 및 대책수립 어려움.
- o 수입업자의 품질보정능력 전무
- 수입업자는 2차 처리시설(개질시설, 등유·경유 탈황시설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수입석유제품의 품질을 보정할 능력이 없음.
- o 수입석유제품의 품질관리체계 부재

- 석유제품 수입시 제반 품질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못함.

- o 수입업자에 품질책임 부과의 어려움
 - 현재 정부는 상표표시제(공급자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사가 언론매체 등에 공식적으로 공시한 제품규격대로 공급할 것을 책임지도록 함.
 - 정유사가 수입할 경우에도 당해사가 공시한 규격대로 보정하여 출하토록되어 있음.
 - 다수의 수입업자 존재시는 규격공시도 번거로우며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초래 할 가능성이 큼.
- 수입업자의 수입제품이 수입사 자체 브랜드주유소 또는 Non-pole 주유소로 공급될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 또는 수입업자의 품질책임이 명확해지나, 타정유사의 상표표시 주유소로 공급될 경우는 품질책임이 불명확해짐.

국민경제적측면

- o 설비유류화 초래 불가피
- 석유수입 자유화는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소요된 석유정제시설의 유류화를 초래하여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 불가피
 - * 일부 수익성유종의 수입비율 상승시 국내 정제시설 유류화율
 - 경유수입 5% 증가시 정제시설 20% 유류화 초래
- 석유수출입의 동시발생으로 국제수지 악화 초래
- 석유제품 수입 자유화시 정유사의 계획공급 동일유

- 종의 수출입 동시 발생으로 수출입의 가격차이 및 수입수송비용의 발생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초래
- 생산제품의 수출시 긴급수출 및 수송선복량 확보 곤란으로 수출가격의 대폭할인 및 수송코스트의 가중 초래
 - 또한 정유사가 일부 석유제품의 수입에 따라 원유처리량을 감축하게 되면, 원유처리량 감축에 따른 경질유 제품수입이 불가피하여 원유도입가격과 경질제품도입가격의 차이분만큼 국제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석유공급비용 상승초래 가능
 - 정유사의 국내석유공급은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입업자의 수입공급가격에 비해 규모의 경제(Scale of Merit) 작용시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가능
 - 수입시 대량구매로 인한 가격교섭력 및 운운비 절감
 - 대형 유조선으로 수송함으로써 수송비 절감 등
 - 오히려, 수입업체간 국제시장에서 소량의 Marginal 제품에 대한 과당 경쟁시 수입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석유산업정책측면

1. 국내 석유정책능력 적정관리 불가능
- 현재 국내 석유정책능력 관리는 「국내 석유수요의 130% 범위내에서 관리(석유사업법시행령 제4조)」되고 있음.
- 허나, 석유수입 자유화시에는 국내 석유정책능력의 적정수준 관리가 어려울 것임.
- 만일, 석유정책능력의 적정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면 이는 국가 에너지 안정공급의 책임을 방치하게 되는 것임.

2. 소비지 정제주의의 붕괴

- 산유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日本, 대만 등 대부분의 석유수입국은 소비지정제주의 정책기조 유지
- 석유수입자유화시 소비지 정제주의 기조 붕괴
- 비산유국의 석유제품 공급체계는 석유제품 수요구조와 연산품 특성상 약 80% 생산공급 및 20%의 수

입공급이 불가피함.

- 그러나, 약 20%에 해당하는 수입물량을 수입업자에 허용시 국내 정유사는 80%의 국내 수요물량 공급을 위해서는 수요구조 및 연산품 특성상 64% 생산공급 및 16%의 수입공급이 불가피
- 이와 같이, 생산공급의 축소 및 석유제품수입의 증가는 비산유국의 에너지 공급정책의 근간인 소비지 정제주의 기반붕괴를 초래함.
- 산유국 또는 메이저의 국내 석유시장 진출 및 영향력 증대 초래
- 소비지 정제주의의 붕괴는 산유국 및 메이저의 국내 석유시장 진출압력을 가중시킬 것임.
- 이는 석유·에너지정책의 국가주권 악화 초래

V. 석유수입업 자유화 실시를 위한 여건

- 석유수입업 자유화동 석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변경은 석유정책의 목표 즉, 석유의 중장기적 안정공급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 필요
- 석유수입업 자유화 실시를 위한 여건
- 석유제품가격 및 생산업자의 이윤수준 완전자유화가 실시되기 전에는 특정제품의 수입업 허가는 불가능함.
-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완전자유화 되는 경우에도, 국내 석유정책 생산업체들의 가격경쟁력 및 가격운용 탄력성이 국제제품시장과 비슷한 수준이 되기 까지는 엄격한 관리 필요
 - 고도화시설에 대한 투자 및 감가상각 상당부분 완료시까지

VI. 현행 석유수입업 관리제도의 보완·개선

- 현행 석유수입업 허가제도
- 대외무역업 등록후 일정 저장시설 구비후 신고
- 개선방향
- 대외무역업 등록후 특정제품에 대하여 일정 저장시설 및 대체 정제생산설비, 품질설비 등 실질적으로 정제업체외에 수입이 불가능하도록 개선

-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제 8조의 2) – 석유수출입업자의 시설

제 8조의 2 (석유수출입업자의 시설)

- 법 제 11조 제 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전년도 수입량(전년도 수입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수입계획)의 60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말한다. 다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의 규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석유저장시설(이동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송유관사업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동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저장시설

【신설】

- 휘발유, 등유, 경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외에 당해 제품의 품질보증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 BPSD 이상 규모의 상압증류시설
 2. 등유 및 경유 탈황시설
 3. 휘발유 개질시설

일본의 소비지 정제주의 정책기조

1. 라이온즈 石油의 휘발유 수입사건

- 사건배경 및 경위
 - 석유정제·원매회사가 아닌 석유류 및 석유대체에너지 개발, 석유 및 화학제품 수송업, 무역업, 부동산 매매 등을 주사업내용으로 하는 라이온즈 石油는 1984년 말 석유업법에 기초하여 자원에너지청에 1984. 12~1985. 3월까지 매월 3000㎘의 가솔린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함.
 - 당시 라이온즈 石油는 日本 석유업법 및 석유비축법상 자격요건은 전부 구비하고 있었음.

- 6000㎘규모의 저장탱크 임대차계약 체결로 저장 능력 구비
- 제품수입계획에 따른 석유비축법상의 비축의무 준수를 위하여 5000㎘ 규모의 비축탱크 확보 준비
- 라이온즈 石油의 석유수입처 및 판매처
 - 수입처 : 싱가포르 석유회사 (20천㎘/월 가솔린 정제능력 보유)
 - : 상호 장기계약 체결을 희망하였으나, 도입초기는 통산성의 승인여부가 불투명하므로 Spot구매계약으로 하고 통산성의 수입승인 결정후 장기계약 체결
 - 판매처 : 자사직영 주유소 (7개) 및 관동권역 도매점
- 가솔린 수입 채산성(당시 수입가격 및 日本 국내판매가격 비교)
 - 라이온스 매출원가

(단위 : ¥ / ℧)

수입 CIF	: 60. 96
관세	: 2. 15
석유세	: 1. 70
가솔린세	: 53. 80
판매관리비 등	: 10. 00
도매가격	: 128. 61
주유소마진	: 10. 00
주유소 판매가격	: 138. 61

- 당시 日本 국내 주유소 평균판매가격 : 150~155
- 라이온즈의 판매경쟁력 유리폭 : 약 11~16 ¥ / ℧

- 사건결말
 - 자원에너지청은 라이온즈 石油의 가솔린 수입신고에 대하여 최초부터 「마음대로 수익성이 좋은 유종만을 제품수입하면 석유의 안정공급체계가 무너진다」고 하여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함.
 - 소비지 정제방식을 견지하는 현행 석유정책 하에서 도저히 승인가능한 성격이 아니나, 법적으로 라이온

즈 石油의 수입신고를 거부할 수도 없었던 자원에너지청은 결국 석유심의회를 거쳐 석유업법 시행후 최초로 「장관권고」의 형태로 라이온즈 석유에 수입중지를 요구하게 됨.

- 1984. 12. 24. 통산성장관은 라이온즈 石油에 대하여 석유수입계획 변경권고를 하달함.
- 이에 대해 라이온즈 石油는 기 도착된 가솔린의 통관을 관철시키고자 함.
- 1985. 1. 4. 라이온즈 石油의 주거래은행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사업에는 응자할 수 없다」는 의향을 라이온즈 석유에 전달
- 1985. 1. 8. 라이온즈 石油는 장관의 권고에 따르기로 함.
- 라이온즈 石油의 수입가솔린은 자원에너지청의 알선으로 「석유화학 원료용 나프타」로서 日本石油에 매각함으로써 종결됨.
- 이 사건을 계기로 통산성은 「특정석유제품 수입 잠정조치법」의 제정 공포(‘85. 12. 20.) 이르게 됨.

※ 통산성장관의 권고내용 전문 (1984. 12. 24)

1. 라이온즈 石油는, 지난 12월 3일 당청을 방문하여 석유수입업 개시신고 및 석유 수입계획 신고서를 접수하였음. 그 수입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신고개요)

- 신고자 : 라이온즈 石油
- 수입계획수량 : 휘발유 매월 3000㎘ (1984. 12 ~ 1985. 3.)
- 저장탱크 : 3000㎘ 2기
- 사업개시예정 : 1984. 12. 5.
- 수입선 : 싱가포르 石油 (SPC)

2. 신고관련 수입계획이 실시될 경우의 문제점

(1) 소비지 정제방식과 석유제품 가격체계

- 석유는 우리나라 1차 에너지공급의 6할 이상을 점하는 경제사회의 중요한 물자이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거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석유의 공급확보를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는 원유 또는 석유제품 어느것인가를 수입하지 않을 수 없음.

- 근본적으로 한나라의 석유제품의 수요구조는 그 나라의 생활양식, 산업구조 등에 의해 규정된다. 한편 석유제품은 원유를 정제하게 되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이 동시에 생산되어, 특정유종만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연산품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석유제품의 공급구조는 설비구성, 원유유종 등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석유제품의 수요구조에 세계의 석유제품 공급구조가 적합하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요구조에 적합한 석유제품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유를 수입하여 수요구조에 적합한 공급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우리나라의 소비지 정제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구미제국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임.
- 물론 소비지 정제방식에 대해서는 내외 석유정세의 변화 등에 대응하고 국제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나, 이러한 국제화추진에 있어서도 석유제품의 안정공급 및 우리나라의 공급구조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정비 상황 등을 고려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행해야 할 것임.

(2) 석유제품 수급 · 가격 등에의 영향

- 각국의 석유제품 가격체계는 이와 같은 소비지 정제방식하에 연산품 특성상 유종별 수요구조 등의 차이에 따라 어느 정도 다름.
-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제품가격은 연료유 평균가격을 1로한 경우 휘발유 1.4, 나프타 0.75, 등유 1.04, 경유 1.05, 중유 0.8 정도로 되어 있으므로 휘발유가 가장 채산성이 크다. 환연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등유등 기타제품이 저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에 의해 전체비용의 상당부분을 회수하는 구도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휘발유의 수입을 승인하게 되면, 휘발유 가격경쟁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시황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이리하면, 휘발유에서 비용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생활필수품인 등유 등 타유종의 가격인

상을 초래케 되어 국민생활에의 영향은 매우 클 것
으로 생각됨.

- 또한 가격측면 뿐만 아니라 수량측면에서도 휘발유가 수입되면 정제회사들이 휘발유생산 축소를 위한 원유처리량의 감축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등유 등 타유종의 공급부족을 초래하게 된다. 더우기 스파트 물량인 휘발유 수입을 유발하여, 휘발유 공급 자체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이유들로, 생필물자를 비롯한 각종 석유제품의 안정공급의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큼.

(3) 우리나라 석유산업에의 영향

- 연산품인 석유제품의 공급주체인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협한 경영환경, 과당 경쟁 체질하에 경영체질이 극히 취약하며, 특히 유통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인 전국의 약 5만 9천개소의 주유소는 금번 휘발유 수입에 의해 중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

(4) 석유공급계획의 실시

- 이와 같이 현 정세하에서 신고관련 석유수입계획의 실시는 등유 등 휘발유이외 유종가격의 양등, 생필물자의 공급혼란을 비롯하여, 연산품인 각종 석유제품의 안정공급상 여러문제를 초래함으로써,
- 석유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확보를 위해 책정된 석유공급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지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3. 석유수입계획의 변경권고

이상과 같은 상황으로 비추어 신고관련 휘발유수입을 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2. 특정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수입잠정조치법

- 「특정 석유제품 수입잠정조치법」제정

(1985. 12. 20)

- 특정석유제품 수입업의 등록제 실시

· 특정석유제품 : 휘발유, 등유, 경유
(동법 제2조)

· 특정석유제품 수입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종류 별로 통상산업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함. (동법 제 3조)

- 등록기준 (동법 제 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조)

내 용	동 법 조 항	동 법 시행규칙 / 별표
○ 수율조정 · 대체 생산 능력을 지닌 자	○ 특정 석유제품의 수입량이 변동되 었을 경우에, 기타석유제품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당해 특정 석유제품생 산량을 변경하기 위한 설비를 소유 할것.	○ 상압증류시설 (160㎘/D이상), 탈황장치, 개질시설
○ 저유능력 · 완충 재고 능력을 지닌 자	○ 특정석유제품 또는 원유를 저장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옥외저장탱크 및 입출하시설
○ 품질조정 능력을 지닌 자	○ 수입제품의 품질 조정을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품질개량설비 - 개질시설 - 수소화정제시설 ○ 품질시험기기 - 유황분 시험기 - RON 시험장치 - 연점/동점도 시험기

○ 적용기간

- 현재는 1997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으나, 1990년 걸프사태를 계기로 국제 석유제품시장에의 의존도 상승은 국내 석유안정공급에 저해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소비자정제주의 기조의 회복으로 동 법의 적용기한 연장 움직임이 크게 거론되었음. ♦